

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

제정 2004. 12. 20 개정 2011. 09. 30
 개정 2012. 04. 25 개정 2013. 12. 23
 개정 2014. 09. 17 개정 2019. 06. 24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정의, 자격, 임용절차, 기간, 구비서류,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비전임교원의 구분) 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·초빙교수·특임교수·객원교수·겸임교수·강사로 구분한다. <개정 2011.9.30> <개정 2013.12.23.> <개정 2014.9.17.> <개정 2019.6.24.>

제3조 (정의) ①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거나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가 교육·연구에 종사하기 위해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 혹은 기업, 단체 또는 개인이 본교에 기부한 기금이나 과실금으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하도록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② <삭제 2013.12.23>

③ <삭제 2011.9.30>

④ 초빙교수는 본교에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
⑤ 특임교수는 학교의 특정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분야의 강의·연구 또는 취업·창업·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. <신설 2014.9.17.>

⑥ 객원교수는 교외학자로서 본교에서 연구 또는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 <개정 2014.9.17.>

⑦ 겸임교수는 산업체, 연구기관, 국가기관, 공공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직위나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강의 또는 연구부문과 유사하고 석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본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 <개정 2014.9.17.>

⑧ 강사는 교육과정운용상 필요로 하는 교원을 말한다. <개정 2014.9.17.> <개정 2019.6.24.>

제4조 (자격) ①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거나 본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 <삭제 2013.12.23>

③ <삭제 2011.9.30>

④ 초빙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⑤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 또는 특정한 분야의 강의, 연구, 취업, 창업, 산학협력 등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. <신설 2014.9.17.>

⑥ 객원교수는 교외학자로서 본교에서 연구 또는 강의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4.9.17.>

⑦ 겸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. 다만, 타 대학(교)의 전임교원은 겸임교수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4.9.17.> <개정 2019.6.24.>

1.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(유사경력 3년 이상)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<개정 2019.6.24.>

2. 원소속기관의 직위 또는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 할 강의 또는 연구부문과 유사한 자

〈개정 2019.6.24.〉

3. 석사학위이상 소지자. 다만 예·체능계열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4.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〈개정 2019.6.24.〉

제6조 (임용기간) ① 석좌교수, 초빙교수, 객원교수,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, 특임교수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「강사인사규정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14.9.17.〉 〈개정 2019.6.24.〉

② 〈삭제 2011.9.30〉

제7조 (구비서류) 비전임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미래전략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래전략처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9.17.〉

1. 〈삭제 2011.9.30〉

2. 겸임교원

가. 이력서

나. 해당 학부장 또는 부속기관장 추천서

다. 학력 및 경력증명서

라. 소속기관장의 동의서

마. 연구실적목록

3. 석좌교수, 객원교수, 특임교수, 초빙교수 〈삭제 2013.12.23〉 〈개정 2014.9.17.〉

가. 이력서

나. 교육, 학술 및 산업체 등의 공적개요 〈개정 2014.9.17.〉

다. 해당 학부(과)장 또는 부속기관장, 부설연구소장 추천서 〈개정 2014.9.17.〉

라. 학력 및 경력증명서 〈개정 2019.6.24.〉

4. 강사 〈실설 2019.6.24.〉

가. 임용지원서

나. 자기소개서

다. 학위증명서(전문학사, 학사, 석사, 박사)

라. 경력·재직증명서

제8조 (임무) ①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한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9.17.〉

1.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무·실험·실습·실기 등의 강의 〈개정 2019.6.24.〉

2.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

3.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수행

② 〈삭제 2013.12.23〉

③ 석좌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는 강의 및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9.17.〉 〈개정 2019.6.24.〉

④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 또는 특정한 분야의 강의, 연구, 취업, 창업, 산학협력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필요시 특정한 과제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9.17.〉

⑤ 강사는 「강사인사규정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19.6.24.〉

제9조(보수) ① 비전임교원에 대한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한다. 〈삭제 2013.12.23〉

② <삭제 2013.12.23.>

③ 강사의 보수 등 처우는 「강사인사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19.6.24.>

제10조 (해임) ① 비전임교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당연히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통보를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강사의 경우 「강사인사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19.6.24.>

② 비전임교원이 임기 중이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③ 겸임교수가 임기 중이라도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<개정 2014.9.17.> .

제11조 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경동대학교정관 및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본 규정 시행당시에 이미 비전임교원으로 임명된 교원은 본규정에 의한 비전임교원으로 간주한다.

③(규정의 폐지)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명예교수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본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